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65호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양시 규칙 제1166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고양시 규칙 제1167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6
고양시 규칙 제1168호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06호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22
고양시 훈령 제407호	고양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5
고양시 훈령 제408호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28
고양시 훈령 제409호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58
고양시 훈령 제410호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92
고양시 훈령 제411호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98

차 례

고 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3-9호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고시	101
고양시 고시 제2023-33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102
고양시 고시 제2023-332호	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지하차도)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03
고양시 고시 제2023-336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107
고양시 고시 제2023-340호	도로명주소 고시	11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377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7호]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13
고양시 공고 제2023-23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42호선(서삼릉길)]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19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규칙 제1165호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관급재료”를 “관급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체결함에 있어서”를 “체결할 때”로 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양시장이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각 구 및 동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한 차례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을 말한다)

나. 한 차례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2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아니할” 을 “않을”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서식에” 를 “제6호서식까지에” 로 한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취할” 을 “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 을 각각 “기한” 으로, “명시하여” 를 “분명하게 밝혀”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 제3항” 을 “제6조제3항” 으로,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8조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관
입 안 자	감 사 관 성 명	감사관 직무대리 이 근 영
	팀 성 장 성 명	회계감사팀장 조 효 제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정 훈 (031-8075-2137)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전부개정으로 계약심사대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지방공기업 등을 의무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산하기관의 계약심사 전문인력 미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기관, 대상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심사대상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조제3호).
 - 대상의 기준금액을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변경하여 심사대상 확대(제3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규칙 제1166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교동란 17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28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주교동	17	1	주교동 중 17-1, 313-16, 350-1, 353-3, 348
		2	산30, 산34-1.3-6.2-2, 산34-9-12, 산35, 3-6-7, 산34-2.3, 산36-2.4, 443-16, 산36-6-9, 362-4, 378-3, 378-1.3.4, 379-1-3, 380, 380-1-4.6-7, 427-1-2, 428-1-4, 430-1.2, 432-1, 432, 433, 433-1, 434, 435, 435-1, 436, 436-1, 437, 438, 438-1.2, 439, 440, 441, 441-1, 442-1-3, 443-1.3.5-7-8
		3	산43-1, 489-19, 산41-1.3, 487-1, 산40-1.6-7, 산38, 산42-1, 489-4, 산45, 산46-6, 산48, 산50-1.3, 산53-1.2, 산49, 산52-1, 11-2, 산39-1, 산46-7, 산55, 산56, 산58, 414-5, 산59-2, 산59, 산61-1.2.3, 산62, 산63, 산64, 산36-1, 산51, 381-1.2, 382, 382-1, 383, 384, 385, 386, 372-1.2, 373, 374, 375, 371-1.2, 370, 367, 368, 369, 366, 364-1, 363-1, 356-1, 378-3, 362-4, 365-1, 388-1.2, 389, 390, 398-1, 387, 393, 298-1.2.4, 299-1, 295, 296, 297-1, 193, 397-1.2, 409, 410, 411, 412-1.2.3.4, 413, 414-1.2, 415, 416, 417, 418, 420, 421, 422, 423, 424, 425-3, 426, 433, 444-1, 445, 446-1.2, 447, 449-1.2.3, 451, 462, 463, 464, 467-1.2.3, 468, 469, 471, 474-1.2.3, 475, 476, 477, 479, 480, 481, 482, 483-1.2,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1.2.3, 493, 494, 495
		4	313-16, 산73, 산74, 산75, 산76, 산77, 506-4.9, 산80, 산81, 527-5, 산86-1.3, 산84-2, 527-22, 산85, 산79-1.2, 산87, 산88, 산89-1, 산86-3.4.5.6.7, 산70, 산71, 산66-1.3.4.5.6.7, 산78-3, 519-1, 산78-5.6, 242-1.2, 243, 265, 266-5.3.4.5, 260-1.4, 267-1, 268-1.2.3.4, 269, 270, 264-2.3, 276, 278, 279-1.2.4.7, 274-1.2.3, 278, 236, 237-1, 238, 231, 232-1, 243, 239, 240, 241, 281, 282, 283, 284-2.3, 286, 285-1.2, 288, 289, 290-1.2.3, 291, 292-1.2.4.5, 277-1.2, 394, 395-1.3, 396, 398, 398-1.2.3.4.5.6, 400, 404, 405, 406, 407, 408, 401, 402, 403-1.2,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3, 514-1.2.3.4.5, 517-1.3, 518, 407, 520-1.2.3.6, 523-1, 524, 525, 527-4.5, 528-3, 529-3.4.5.6.7.8, 530
	28	1	주교동 중 302-3.9.11.12.14 동우빌라 1.2.3.4.5동
		2	300-1-5, 301, 301-1.2, 302-3.7.9.13-15.19.20.25, 303-1.2.4.11.12.14.38.39, 304-2.3.7.9.10.12.14.17.18
		3	주교동 272-1.4 윤창아파트

		4	주교동 273-6 백양빌라 273-45-7-12
		5	주교동 273-1 예중파크뷰아파트
		6	주교동 275-15-8-11-12-14-15, 307-1-4-5-6
		7	주교동 275-13-16-17-18 금산빌라 가나다라동
		8	303-3 그린힐타운 101동 303-5 그린힐타운 102동 303-21 그린힐타운 103동 304-2 그린힐타운 104동 303-26 그린힐타운 105동 303-6 그린힐타운 106동 302-25 그린힐타운 107동 303-8 그린힐타운 108동 302-4 그린힐타운 109동 302-1 그린힐타운 110동
		9	302-5 그린힐타운 111동 305-13 그린힐타운 112동 305-17 그린힐타운 113동 305-2 그린힐타운 114동 305-18 그린힐타운 115동

같은 표 중 원신동란 5통 4반 및 5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원신동	5	4	신원동 중 248, 247-1-2-3, 243-1-5, 243-6-7-9, 243-10-20, 243-24-27, 249, 247-1-3, 253-1-43, 251-1-3-4-5-6, 268-2-4-6-10-12, 269, 269-1-2, 252, 252-1-9-11-23, 230-9, 232, 235-1-2, 233, 230-6-9, 237, 240, 240-1-4, 238-1-4, 241-1-2-4-5, 242-1-4
		5	신원동 중 255-1-21, 265-1-43, 254-1-4, 256-1-9, 257, 257-1-2-5-6, 260-1-46, 266-2-3-7-8-10-30, 268-2-4-5-6-10-12, 264-2-4-20, 258, 258-1-8, 267-2-9, 293-1-6, 293-9-11, 292, 292-1, 294-1-8, 294-11-12-17-21

같은 표 중 효자동란 5통 및 6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19통 및 20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효자동	5	1	지축동 중 산127-1, 산132, 산133-3, 산133-5-8, 산133-14, 산133-16, 산134-1-2, 산135-1-9, 산136, 산137-1, 산138, 산139, 산140, 산141, 산142-1, 산142-2, 산142-3, 산142-6, 산142-12, 산142-15-16, 산142-18, 산142-19, 산143, 산144, 산145-1-6, 산146, 산147, 산148-2, 산148-3, 산148-4, 산148-7, 산149-1, 산151-1, 산151-3, 산151-4, 산151-6, 산151-7, 산151-10, 산156, 산157, 산158, 산159-3, 산159-4, 산223, 415, 416, 417-5, 418-10, 519-1, 519-16, 519-17, 519-18, 520, 520-1, 521, 522-12, 523-7, 524-1-5, 525-1, 525-2, 525-6, 526, 553-1, 553-9, 553-10, 553-13-15, 577, 577-12, 579, 580-1-3, 580-9, 580-10, 580-11, 580-12, 587-1, 588, 588-2, 588-3, 588-7, 589, 589-1-4, 589-6, 589-7, 590, 591, 592, 592-1, 593-1-2, 593-5, 593-6, 593-7, 594, 594-2, 594-3, 594-4, 594-6, 594-7, 595, 595-7, 595-15, 596, 598, 598-2, 598-3, 600-2, 600-3, 601-1, 602, 603, 924(공원), 924-1-4, 924-6-9, 926, 926-1-12, 928-2-4

		지축동 중 산72-2, 산72-4, 산72-5, 산72-10, 산81-1, 산82, 산83, 산83-1, 산83-2, 산83-3, 산83-4, 산84, 산84-1, 산86, 산87-1, 산87-4, 산87-6~18, 산88-1, 산88-2, 산88-3, 산88-6, 산88-7, 산88-8, 산88-9, 산88-13, 산104, 산105, 산106-2~3, 산107-1, 산107-2, 산107-3, 산107-4, 산107-5, 산107-6, 산108-1, 산109-1, 산109-2, 산109-3, 산109-4, 산110, 산114-3, 산115, 산116, 산118, 산119, 산120-1, 산120-8, 산120-9, 산126, 산126-1, 367, 367-1, 367-2, 367-3, 367-5, 367-6, 367-7, 367-8, 367-9, 367-11, 367-12, 419-2, 419-4, 419-5, 419-6, 420, 421-1, 424-13, 424-14, 424-15, 425-15, 425-20, 428-1, 429-3, 429-4, 429-5, 432, 440-30, 440-31, 440-50, 440-55, 440-56, 440-69, 440-74, 440-75, 440-76, 440-77, 440-78, 440-81, 440-94, 440-95, 440-96, 440-98, 440-99, 440-100, 440-101, 440-102, 440-103, 440-106, 440-109, 440-111, 440-112, 440-113, 440-114, 440-132, 440-133, 440-134, 440-135, 440-151, 443-1, 443-7, 443-19, 518-2, 518-5, 518-6, 518-7, 517-35, 972, 976, 976-1~5, 978, 978-1, 978-3~5, 983, 983-1~5, 986, 986-1~3
	2	
		지축동 중 329, 329-1, 329-2, 332, 333-1~3, 376-3, 378-2, 386-2, 1133, 1133-1~5, 1134, 1134-1~2, 1136, 1136-1~2, 1137(공), 1139, 1139-1~9, 1142, 1142-1~3, 1142-4(공), 1142-5~14, 1144, 1144-1~17, 1146, 1146-1~4, 1150(공), 1151, 1151-1~4, 1154, 1154-1~10, 1156, 1156-1~5, 1158, 1158-1~5, 1160, 1160-1~2, 1162, 1162-1, 1165
	3	
6	1	지축동 중 888, 888-1(공원), 888-2, 890공원, 890-1~6, 892, 892-1~3, 892-4(공원), 892-5~12, 894, 894-1~7, 895, 896(공원), 897, 897-1~4
	2	지축동 중 산160-1~5, 산161-1~2, 산162, 산164-1, 산164-2, 산164-9, 산164-10, 산167-5~6, 산168, 산169, 산170, 산172-8, 산180-1, 산181, 산182, 산183-1~4, 산184, 산185, 산186, 산187, 산188-192, 산193, 산194-1, 611-1, 612-9, 614-5, 614-11, 615-1~3, 724-45, 724-59~62, 754-1(종교), 754-2, 754-5, 757-4, 757-5, 757-6, 757-15, 837-3, 850-855(공원), 866(공원), 867(공원), 869(공원), 872-1(공원)
	3	지축동 중 산195, 산198-9, 산199-1, 685-3, 685-7, 687, 687-1, 688-1, 688-4, 704-50, 712-5, 712-17, 712-19, 712-24, 720-22, 724-3(종교), 724-5, 724-6, 724-7, 724-8, 724-9, 724-10, 724-11, 724-18, 724-22, 724-25, 724-27, 724-28, 724-29, 724-30, 724-31, 724-32, 724-33, 724-34, 724-35, 724-36, 724-38, 724-39, 724-40, 724-48~49, 724-51, 724-54, 724-63, 724-73, 724-75, 725-18, 725-19, 725-20, 725-22, 725-26, 725-31, 725-32, 725-35, 725-37, 725-38, 725-40, 725-41, 742-2, 742-5, 742-8, 742-11, 742-12, 742-13, 742-17, 742-18, 742-20, 742-21, 742-22, 742-23, 748-3, 748-13, 748-16, 757-1, 757-3, 757-8, 757-13, 757-14, 757-16, 757-17, 757-18~20, 757-23, 757-24, 758-1, 758-3, 758-4, 758-5~6, 758-9~10, 758-12, 759-4, 759-6, 847(공원), 856(공원), 858(공원), 859(공원), 860(공원), 861-863(공원), 883(공원), 885(공원), 886(공원)
19	1	지축동 중 472-7, 476-16, 694-1, 694-2, 694-32, 695-1, 695-6, 695-24, 695-30, 708-2, 708-4, 708-5, 708-9, 827-33, 994(공원), 996, 996-1~3, 998, 998-1, 998-2(공원), 998-3~4, 1000, 1001(공원), 1005(공원), 1005-1~2, 1005-4~9, 1007(공원), 1007-1~2, 1007-4~8, 1007-9, 1009(공원), 1057, 1057-1~3, 1057-5, 1059, 1059-1, 1060(공원), 1061
	2	지축동 중 472-46, 472-48, 473-1~3, 473-8, 685-2, 685-4, 693-1, 693-5, 693-6, 694-18, 694-21~23, 694-27, 694-35, 695-9, 699-1, 702-4, 702-9, 703-5, 704-7, 704-8, 704-17, 704-18, 704-22, 705-1, 705-6, 705-7, 705-8, 706-1, 706-2, 706-4, 706-5, 706-6, 708-3, 709, 709-1, 827-10, 1017, 1017-1~9, 1019, 1019-1, 1019-3~10, 1021, 1021-1~9, 1026-2, 1028, 1028-1~10, 1030, 1030-1~11, 1032, 1032-1~11, 1034-1, 1034-2, 1038-1(공원), 1040, 1040-1~3, 1041, 1041-1~9, 1043, 1043-1~11, 1044, 1044-1~2, 1048
	3	지축동 중 471, 472-26, 472-29, 472-30, 472-40, 472-58, 476-3, 476-6, 476-7, 476-21, 476-25, 476-27, 476-30, 476-38, 476-40, 476-46, 476-47, 476-54, 480-1, 480-8, 480-9, 481, 482, 482-2, 483, 483-2, 484, 486-1, 486-5, 486-8, 486-9, 487-5, 487-29, 487-30, 487-37, 488-2, 488-8, 708-2, 708-4, 708-5, 708-9, 827-33, 1063(공원), 1070-1~2, 1072, 1072-1, 1074, 1074-1~5, 1076, 1076-1~4, 1078(종교), 1078-1(공원), 1080, 1080-1~11, 1082, 1082-1~8

			지축동 중 산90, 440-32, 440-33, 440-34, 440-35, 440-39, 440-44, 440-45, 440-46, 440-47, 440-49, 440-57, 440-68, 440-70, 440-119, 440-136, 440-137, 440-138, 440-139, 440-140, 440-141, 440-142, 440-143, 440-145, 440-147, 440-148, 440-149, 440-150, 443-20, 451-53, 451-56, 451-60, 456, 456-1, 456-4, 463-2, 464-1, 464-3, 464-4, 1095, 1095-1~3, 1097, 1097-1~3, 1100, 1100-1, 1102, 1102-1, 1102-2, 1102-4, 1105, 1105-2, 1105-3, 1105-4, 1105-5, 1105-7, 1107, 1107-2~4, 1111, 1111-1~2, 1113, 1113-1~3, 1114, 1114-1~2, 1119(종교)
	20	1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1동 2층~14층
		2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2동 1층~11층
		3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2동 12층~21층
		4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3동 2층~9층
		5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3동 10층~16층
		6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4동 1층~11층
		7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4동 12층~21층
		8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5동 1층~8층
		9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5동 9층~16층
		10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6동 1층~8층
		11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6동 9층~15층
		12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7동 1층~8층
		13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7동 9층~16층
		14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8동 1층~10층
		15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8동 11층~20층
		16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9동 1층~11층
		17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09동 12층~21층
		18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10동 1층~8층
		19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 210동 9층~16층

같은 표 중 삼송1동란 3통 2반 및 7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6통 및 7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8통 3반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10통 1반 및 6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14통 및 19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25통 및 26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삼송1동	3	2	오금동 중 204, 205, 206, 206-1~2, 208-1~5, 209-1~8, 227, 227-1~23, 227-5~11, 228-1~12, 244, 245-1~2, 246-2~36-7-10-13, 247-1~7, 248-1~24, 273, 273-1~4, 274, 274-2~3, 산126-1~7, 산126-14, 산142, 산143-13, 산144-147, 산147-1, 산149-1~3-7, 산151, 산155, 산156-1, 산157-1, 산158-166
		7	오금동 중 190-205, 산107, 산108-1, 산149-24, 산149-8, 산167-170, 산177, 산179, 438-7
	6	1	삼송동 중 30-27-28, 30-34-36, 30-38-40, 30-42-44, 30-46-50, 135-73-78, 135-80-85, 140-26-8, 141-1~2, 143-1~23-24
		2	삼송동 중 135-33, 135-55~72, 135-90, 140-35-12-17-20, 140-22-24, 140-26-27, 140-29-32, 140-38, 142, 143-22 1-50-51-52-55-82
		3	삼송동 중 135-40-54, 135-91, 136-26, 140-15-39-40-41, 143-37-8-10-17-19-26-28-31-32-34-37-38-39-40-64-86-89

7	4	삼송동 중 135-25-678-9, 135-34-39, 135-87, 136-14, 136-17-25, 136-28, 139-4, 140-4, 143-6-9, 143-11-16, 143-18-20-35-36-42-43-44-47, 143-60-61-62-67-73
	5	삼송동 중 312, 312-1-2, 313, 313-1-7, 314, 314-1-15, 315, 315-1-5
	1	삼송동 중 13-1, 16-5-26-45-46-47, 20-8-10-13, 128-2-20-21-22-23-24, 128-25-33, 128-102-105, 128-108-109-129-216-312, 318, 266-1
	2	삼송동 중 16-1-8-14-15-17-19-20-22-25-37-41-43-44, 26-5-7-8-9-13-17-18-19-21, 128-48-90-91-116-130-131
	3	삼송동 중 128-3-34-35-40-41-42-43-47, 128-92-98, 128-110-112, 128-123-134-135-136, 128-218-233, 128-238
	4	삼송동 중 11-4, 11-7-15, 11-17-19, 11-23-25-26-28, 128-10, 128-36-39, 128-44-46, 128-72-74-75-79-86-88-106-107, 128-113-115, 128-118-137-138-139, 128-234-237, 128-239-240-242-243-244-246, 147-10, 270-3-5
	5	삼송동 중 128-75-80-81, 128-140-154, 128-156-172, 128-202-215-292-293-301-302-303
	6	삼송동 중 128-82, 128-174-182, 128-184-197, 146-1-2-4, 147-1-3, 147-5-7, 147-11-12-14-15, 149-1-2
8	7	삼송동 중 128-50-71, 128-119-122, 128-266-299, 128-304-308, 145
	8	삼송동 중 316, 316-1-3, 317, 317-1-4, 318, 318-1-4
10	3	삼송동 중 79, 80-1-3-4-5-6-9-11-12-14-16-17, 80-19-23, 81, 82, 83-1-3-4-6-7-8, 84, 84-30, 85-1-4, 85-6-8, 86-4-7, 301-6, 산32-2, 산33-2
14	1	오금동 중 596, 597-1-2-3-4-5-6-7-8, 598-1-2-3-4-5-6-7-8-9, 600, 601-1, 602-1-2-3-4-5-6-7, 603-1-2-3-4-5-6-7-8-9
	6	오금동 중 583, 583-1-2, 584, 593
19	1	삼송동 중 297, 297-1-3, 298, 298-1-6, 299, 299-1-5, 300, 300-1-2, 301, 301-1-5
	2	삼송동 중 301-5, 302, 302-1-4, 303, 303-1-12, 304, 304-1, 305, 305-1-2
25	1	오금동 644, 645 삼송자이더빌리지 501동~506동, 512동
	2	오금동 644 삼송자이더빌리지 507동~511동, 513동~515동
	3	오금동 642 삼송자이더빌리지 516동~520동
	4	오금동 663-2 삼송자이더빌리지 601동~605동
	5	오금동 668 삼송자이더빌리지 611동~617동
	6	오금동 668 삼송자이더빌리지 618동~624동
	7	오금동 중 670 삼송자이더빌리지 631동~639동, 134, 678-680, 산76, 산77-1-4-5-6, 산78, 산79-1-2-3-11-12, 산84, 산85, 산86, 산86-1-2
26	1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01동~204동, 594
	2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05동~209동
	3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10동~213동
	4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14동~217동
	5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18동~222동
	6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23동~228동
	7	오금동 595 삼송 서한 비아티움 229동~232동, 오금동 중 586-590
26	1	오금동 656 힐스테이트라피아노 101동~104동
	2	오금동 655 힐스테이트라피아노 201동~208동

		3	오금동 655 힐스테이트라피아노 209동~217동
		4	오금동 655 힐스테이트라피아노 218동~226동
		5	오금동 654 힐스테이트라피아노 301동~310동
		6	오금동 중 653 힐스테이트라피아노 401동~407동, 652
		7	오금동 651 힐스테이트라피아노 501동~510동
		8	오금동 중 649 힐스테이트라피아노 601동~608동, 650
		9	오금동 649 힐스테이트라피아노 609동~615동
		10	오금동 648 힐스테이트라피아노 701동~709동
		11	오금동 중 2-1-6, 9-4, 17-18, 39, 40-6, 432, 436, 646-647, 657-1, 681, 682, 683-1-2-3-4-5-6-7, 684-1-2-3-4-5-6-7-8, 685, 686, 687, 689, 690, 691-1-2-3-4, 692-1-2-3-4-5-6-7-8 산1~산3, 산3-1-2, 산6~산8, 산12~산15, 산17-1, 산18-1-2-3, 산19, 산20-1, 산21, 산22-1-3-5-6-7-8-9-10, 25, 25-1-2, 산26-2, 산29-2, 산30, 산40-1-3, 산42-2, 산43, 산46-1, 산47~산50, 산50-2, 산51-1-5, 산55-9, 산60, 산70-1, 산74-6, 산198

같은 표 중 삼송2동란 7통에 9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8통 및 11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20통에 15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23통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삼송2동	7	9	원흥동 495, 499, 500-1-2, 501, 502, 503, 504, 527-5, 528-2~12, 528-17~23, 528-25~34, 528-37-39-43-44-45-46-64-68-69-70-74-75-78-79-80-81-82-85, 529-1-2, 532-1-2, 534-2, 535-1-3-4, 536-1-2, 569-8-13, 583
		8	1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4동 101호~807호 2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4동 901호~1707호 3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5동 101호~807호 4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5동 901호~1707호 5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6동 102호~1106호 6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7동 103호~610호 7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7동 701호~1110호 8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8동 101호~610호 9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8동 701호~1206호, 상가
	11	1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1동 101호~808호
		2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1동 901호~1808호
		3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2동 101호~808호
		4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2동 901호~1808호
		5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3동 101호~908호
		6	원흥동 669 삼송마을엘에이치14단지 1403동 1001호~1908호
	20	15	원흥동 산51-2, 산53-2-16-17, 산54-13, 산54-3, 491-1, 491-13~21, 491-24-25-26-32-33-35-36, 491-38-44, 528-47 · 53-54-55-56-59-60-63-71-83-84, 537-2, 539, 539-1-8, 541-4-5-11-12-14-16-17-19, 569-1
		23	1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3동 1-3호 상가 및 301호~2503호

		2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3동 2601호~4903호
		3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3동 4-6호 상가 및 304호~2506호
		4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3동 2604호~4906호
		5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4동 1-3호 상가 및 101호~202호, 301호~2503호
		6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4동 2601호~ 4703호
		7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4동 4-6호 상가 및 105호~206호, 304호~2506호
		8	원흥동 623 원흥역 푸르지오 104동 2604호 ~4706호
		9	원흥동 619 삼성3차 아이파크 301동 202호, 301호~2903호
		10	원흥동 619 삼성3차 아이파크 302동 202호, 301호~2902호
		11	원흥동 중 471-10, 618, 619-1, 620, 620-1~5, 621, 621-1~24, 622, 622-3, 626

같은 표 중 대덕동란 8통 중 “LH 국민임대”를 각각 “고양덕은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로 하고, 같은 란 9통 및 10통 중 “중흥S클래스파크시티”를 각각 “DMC 한강숲 중흥S-CLASS”로 하며, 같은 란 제11통 중 “리버파크자이”를 각각 “자이더리버”로 하고, 같은 란 제12통 중 “대방노블랜드”를 각각 “DMC 디에트르 한강”으로 하며, 같은 란 제13통 중 “리버시티자이”를 각각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로 하고, 같은 란 제14통 중 “호반써밋 DMC 힐즈”를 각각 “DMC한강 호반써밋”으로 하며, 같은 란 제15통 중 “리버포레자이”를 각각 “자이 더 포레리버뷰”로 한다.

같은 표 중 중산2동란 5통 중 “하늘마을”을 각각 “센트럴더포레”로 하고, 같은 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6통 6반 및 7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7통 1반 및 3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8통 7반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12통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18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 할 구 역
중산2동	5	1	중산동 1716, 중산동 1717 센트럴더포레 601동
	6	6	중산동 1, 1-2~10, 2, 2-1, 3-1-2-3-7-13~17-19, 92-16, 산96-1~3, 산97-45, 산98, 99-2-3, 108-15-16-17, 8-7-8-9-10-11-12-13-15-16-20-23-24(숲속빌라)-25-26-31-33-34
		7	중산동 1712, 1713, 1714, 1715, 1718, 1719, 중산동 1720 중흥에스클래스타운하우스
	7	1	중산동 중 산100, 3-10, 4, 4-2, 5-6-7(현대미소지움), 6(삼성캐슬), 6-2-3(삼성캐슬), 7, 10, 10-2, 11, 12-1, 13-1, 13-3, 13-8, 14-2-3(중산 라데팡스), 15, 15-4(약산팰리스), 16-19, 16-22, 16-1-24-25-26-29-30-31-32(현대미소지움), 18, 19-30, 19-35, 19-39(더페이스), 19-40, 19-42, 19-55
		3	중산동 71, 71-7, 80, 80-6, 81, 81-3, 82-1, 83-2, 84-1-2-7, 85-2-3, 86, 90-2, 105-2-6-7-13
	8	7	중산동 13-24, 19, 19-3-4-5-9-10-11(광석빌라), 19-6(리스빌라), 19-7-8(초원빌라), 19-12-13-16(주산빌라), 19-14(오성빌라), 19-17, 19-18-19(기성주택), 19-20, 19-64, 20
	12	1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08동 201호~3102호
		2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08동 103호~3104호

	18	3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09동 201호~3202호
		4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09동 103호~3204호
		5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09동 105호~3206호
		6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10동 301호~3202호
		7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10동 103호~3204호
		8	중산동 1841 일산센트럴아이파크 110동 105호~3206호
		1	중산동 1842 일산2차아이파크 201동
		2	중산동 1842 일산2차아이파크 202동
		3	중산동 1842 일산2차아이파크 203동
		4	중산동 1842 일산2차아이파크 204동

같은 표 중 마두1동란 23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마두1동	23	1	마두동 812-814 정발마을 801동~805동 마두동 815-819, 1121

같은 표 중 장항1동란 13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14통 및 15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장항1동	13	1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1동 301호~1309호
		2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1동 1401호~2409호
		3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1동 2501호~3609호
	14	1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2동 301호~1309호
		2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2동 1401호~2409호
		3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2동 2501호~3609호
	15	1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3동 301호~1309호
		2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3동 1401호~2409호
		3	장항동 1758-1 일산한류월드유보라더스마트오피스텔 103동 2501호~3609호

같은 표 중 고봉동란 28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3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고봉동	28	1	성석동 산41, 산44, 산44-2, 산47-1, 산47-2, 206, 206-1-2, 805-1-2-3-5-11, 806-1-5-7-14, 807-1-2-5-9, 811-1-3-5-6-8-10-13-14-16-19-21-27, 812-813, 813-1, 814, 814-1-3-5-21, 815-2-4, 844-1-3-5-12-14-26-28-29, 847-1-17-20-23-25-27-30, 848-1-7-9-22 · 24-26-28, 849, 849-1, 850-2-3-5-7, 854-2-3-6-9-12-14-16-18-42

		2	성석동 산46, 산46-1, 195-1-5-7-11-16-18-20-23-31-38-40-43-47-49-53-55-57-62-90-97, 203-1-3-5, 204-205, 207, 208-1-4, 209-1-6, 210, 211-1-5, 212, 213-1-5, 214-217, 217-1, 218-1-7, 219-1-35-8, 220-1-35-8, 221-1-6-8, 222, 222-2, 808-1-3-4-6-7-8-14, 809-1
	30	1	산36-2, 산37-2, 170-1-2-5-8-9-11, 171-1-4-15-18-20-21-23-24-26-28-30-31-33-36, 172-4-7-10-13-16-18-20-22, 174-2-9-13-19-20-32-47-50-52, 176, 176-1-4-8-10
		2	성석동 174-3-7-8-10-11-27-29-41-42-45, 175-10-11, 176-2-3-5-6-7, 177, 178-1-4-8-12-14-16, 179, 179-2-4, 180, 180-1-6, 181, 181-1-8, 182, 182-4-7, 185, 185-1-2, 189, 189-2-3, 190, 190-1-2-4-10-13-14, 191, 191-1-2, 192, 192-1, 193, 195-6-13-22-58-61-64-65-67-89-99-107, 198, 198-1-4, 199-200, 200-1-6, 201, 201-1-6, 202

같은 표 중 탄현2동 1통, 4통 및 7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10통 2반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11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15통부터 17통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탄현2동	1	1	탄현동 1480 탄현마을 701동
		2	탄현동 1480 탄현마을 702동
		3	탄현동 1480 탄현마을 703동
	4	1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01동
		2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02동
		3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10동
		4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11동
	7	1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아파트 117동
		2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아파트 118동
		3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아파트 119동
		4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아파트 120동
	10	2	탄현동 91-1-12, 92-1-18-30, 94-1-9-11, 95-1, 96, 97, 97-1-46-9, 98, 98-1-13, 99, 99-1, 100-4-5-6-17-20, 101-1-2-5, 102, 103, 103-1, 106-1-2-4-25-38-40-42-43-58-61, 117-69-71-74-76, 132-69-72-96-97, 1447-3-5-10-15, 1449, 1472, 1649, 1651-1656, 산1-13 · 17, 산2-1, 산15-6 · 9 · 14, 산72-3 · 6 · 8, 산87
		1	탄현동 1650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 101동, 상가
	15	1	탄현동 1480 탄현마을 704동
		2	탄현동 1480 탄현마을 705동
		3	탄현동 1480 탄현마을 706동
	16	1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12동
		2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13동
		3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15동
	17	1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아파트 121동
		2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아파트 122동
		3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23동
		4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아파트 125동, 큰마을 분산상가

같은 표 중 덕이동란 4통 4반 및 5반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4통 1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행정동)	통	반	관할구역
-------------	---	---	------

택이동	4	4	택이동 중 1002-1, 1002-2, 1002-3, 1003, 1003-1, 1003-2, 1003-3, 1003-4, 1005-1, 1005-2, 1008, 1009, 1010, 1011-1, 1011-2, 1013-1, 1013-2, 1014-1, 1014-2, 1023-1, 1023-19, 1024, 1025, 1027-3
		5	택이동 중 853-4, 853-6, 854-2, 854-3, 855-1~14, 855-19, 856-1, 856-2, 856-3, 857-1, 857-2, 858-1, 858-2, 858-3, 858-4, 859, 860-1~8, 861-1-5, 862-1, 862-2, 862-3, 863-2-8, 864, 865-2, 866-1, 866-2, 867, 868, 869-1, 869-2, 870-1, 870-2, 871-1, 871-2, 872, 873-1, 873-2, 874, 874-6, 875, 876, 877-1, 877-2, 878-1, 878-2, 879-1, 879-2, 880-1, 880-2, 880-3, 881, 882-2, 882-3, 882-4, 882-5, 883, 884, 885-1, 885-2, 889-1, 889-2, 890, 891-1, 891-2, 892, 893-1, 893-2, 894, 895-1, 895-2, 896, 897-1, 897-2, 898, 899-1, 899-2, 900-1, 900-2, 901, 902-1, 902-2, 902-3, 903-1, 903-2, 904, 905-1, 905-2, 906-1, 906-2, 907, 908, 909, 909-1, 909-2, 910-1, 910-2, 960-2, 961-2, 971-1, 971-2, 971-3, 971-4, 972-1, 972-2, 973-1~6, 974-1, 974-2, 974-3, 974-4, 975-1, 975-2, 975-3, 975-4, 975-5, 977-1, 977-2, 978-1, 978-2, 983-1, 983-2, 983-9, 984, 985-1~6, 986, 986-1, 986-2, 986-3, 987-1~13, 988-1, 988-2, 989-1, 989-2, 989-3
		24	택이동 중 945, 946-1, 947, 948, 949-1, 949-2, 950, 951, 951-1, 952, 953-1, 953-2, 954, 954-1, 955, 979, 980, 981, 982-1, 982-2, 982-3, 1006, 1006-1, 1007, 1022-1~5, 1023-2, 1023-4, 1023-5, 1023-7, 1023-8, 1023-13, 1023-14, 1023-17, 1023-20, 1023-25, 1026, 1027, 1029, 1030-1, 1030-2, 1030-3, 1031, 1032, 1033, 1035, 1036, 1036-1, 1036-2, 1300-1, 1300-2, 1044-1, 1044-2, 1044-3, 1044-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 안 자	과 성 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 성 명	자치행정팀장 김 복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민 욱 (031-8075-2484)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주택 신축 및 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주택 입주 및 오류지번 정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함(별표).

- 조정내역 : 12개 통 51개 반 증설

※ (조정 전) 1,098통 6,889반 → (조정 후) 1,110통 6,940반

구 분		조정 전		증감		조정 후		통반 변경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합 계				12	51			※ (조정 전) 1,098통 6,889반 → (조정 후) 1,110통 6,940반
1	주 교 동	27	231	1	-	28	231	○ 1개 통 신설, 관할구역 조정 - 세대수 과밀 주택(다세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7통 관할구역 조정, 28통 신설
2	원 신 동	21	127	-	-	21	127	○ 5통 2개 반 경계 조정 -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5통4반과 5통5반 경계 조정
3	효 자 동	18	166	2	23	20	189	○ 2개 통 경계 조정, 2개 통 신설 - 5통, 6통 경계 조정, - 세대수 과밀 주택(다세대주택) 입주(19통) 및 A-2블록 입주(20통)에 따른 신설
4	삼송1동	24	135	2	18	26	153	○ 5개 통 경계 조정, 2개 통 신설 -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6통, 7통, 10통, 14통, 19통 경계 조정 - 삼송서한 비아티움(25통) 및 힐스테이트라피아노(26통) 입주에 따른 신설
5	삼송2동	25	187	-	3	25	190	○ 4개 통 관할구역 조정 및 3개 반 증설 - 인구 과소(8통) 및 과대(11통) 통과 7통, 20통의 적절한 관할구역 조정
6	대 덕 동	18	130	-	-	18	130	○ 8개 통 공동주택 명칭 변경 - 8통~15통 내의 아파트명을 건축물대장과 일치
7	중산2동	17	120	1	-	18	120	○ 1개 통 증설, 지번 조정, 공동주택 명칭 변경 - 5통 내 아파트명 건축물대장과 일치 및 6통6반·7반, 7통1반·3반, 8통7반 지번조정 - 세대수 과밀 공동주택(12통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분리하여 18통 신설
8	마두1동	23	172	-	-	23	172	○ 1개 반 지번 조정 - 23통1반 누락지번 추가
9	장항1동	13	36	2	6	15	42	○ 2개 통, 6개 반 증설 - 세대수 과밀 오피스텔(13통 유보라더스마트) 분리하여 14통, 15통 신설
10	고 봉 동	29	123	1	1	30	124	○ 1개 통 신설, 관할구역 조정 - 세대수 과밀 주택(다세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8통 관할구역 조정, 30통 신설
11	탄현2동	14	78	3	-	17	78	○ 3개통 신설, 과거 지번 정정 - 세대수 과밀 1통, 4통, 7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하여 15통, 16통, 17통 신설 - 10통2반, 11통1반 과거지번 정정
12	덕 이 동	24	120	-	-	24	120	○ 오류 지번 정정 - 4통4반·5반, 24통1반 해당 통·반으로 지번 이동 및 누락 지번 추가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규칙 제1167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관광과
입안자	과장명	관광과장 김 동 원
	팀장명	관광정책팀장 김 관 양
	담당자 성명·전화	성 남 신 031-8075-3404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시간 및 이용 조건 등의 내용이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규칙 제1168호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로, “의견진술”을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각각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신청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의 제목 “(의견진술)” 을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의견진술인” 을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 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의견진술인” 을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 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견진술심의조서” 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견진술인” 을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교통과
입안자	과장 성명	주차교통과장 김 두 한
	팀장 성명	주차정책팀장 박 영 삼
	담당자 성명·전화	송 영 준 031-8075-2921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분야		주·정차 위반		
단속부서				
단속일자	년 월 일 시 분		단속장소	
차량번호				
의견제출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의견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2년도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를 우리 시 사정에 맞게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관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 나. 주정차 위반 불복 관련하여 의견진술 기간 내 미제출한 의견이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406호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를 “제22조와” 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집행부서”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고양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아니할” 을 “하지 않을”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하고자” 를 “추진하려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통보요구일부터” 를 “통보요구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을 “있는” 으로, “사전에” 를 “미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 을 각각 “기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명시하여” 를 “분명하게 밝혀” 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상감사는” 을 “감사부서의 장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관기관(부서)” 을 “유관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접수일 부터” 를 “접수일부터”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처리하는데” 를 “처리하는 데” 로, “아니한다” 를 “아니다” 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중 “추정가격” 을 각각 “추정금액”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 을 “공사” 로 하며, 같은 표 비 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추정금액”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관
입 안 자	감 사 관 성 명	감사관 직무대리 이 근 영
	팀 장 성 명	회계감사팀장 조 효 제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정 훈 (031-8075-2137)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고양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개정에 맞춰 일상감사 대상기준을 계약심사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개정에 맞춰 일상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정비
 - 심사대상 집행부서를 「고양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주부서와 동일하게 변경함(제2조제3호).
 - 심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변경함(별표).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407호

고양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을 “하되,” 로, “만료전” 을 “만료 전” 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당 등) 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협조하여야” 를 “협조해야” 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정책관
입 안 자	부서장 성 명	기획정책관 박 광 영
	팀 장 성 명	정책팀장 변 형 수
	담당자 성명 · 전화	권 지 현 (031-8075-2063)

고양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한 자문 및 복잡·다양해지는 정책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고양시 특별보좌관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특별보좌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408호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원근로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채용담당 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및 근무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사전승인 및 고용승인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시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9. “채용비리 피해자”란 제2조제8호의 채용비리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8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로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제13조제3항제1호의 사유로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과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시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무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관리·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근로자 등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시가 정하는 조례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제4조(채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를 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選任)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등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및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 인력이나 지역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종별·직무별 응시자격은 채용계획서에 따른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채용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서류심사 기준의 다양화 및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및 시험방법 등 채용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 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 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채용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외부 채용 대행업체에 채용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시험방식을 따르며, 제1호 및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성·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시험을 포함한다)
5. 면접전형

② 시장은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업무내용,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채용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채용담당 부서는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및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따른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시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 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및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시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 ⑥ 시장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및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시장은 제13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직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한 후 모집인원, 채용예정직무, 자격 기준, 선발 기준, 선발방법, 보수, 근무조건 및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명단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선발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시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내부·외부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채용예정분야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③ 시장은 각 전형별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에서 응시요건의 적합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면접전형에서는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응시자와 친족·교우·동료 관계거나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심사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응시자는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 기피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이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채용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한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채용서류) ①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이력서에 시 재직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6.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시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

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 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및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위원은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일 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 기준) ① 채용시험 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1에 따른 채용시험 법정가점을 부여하며, 법정가점 외의 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형평적 가점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중 제1항에 따른 가점을 받는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채용공고 시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생, 근로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계획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점검위원으로 구성하되, 채용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는 제외한다.
- ③ 점검위원은 채용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시장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채용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점검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

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르며, 시장은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 관리) ① 시장은 감사부서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채용계획 수립 및 서류·면접전형 등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시 소속 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록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시장은 채용공고에 제1항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정합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시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직근로자 근로계약) 시장은 채용예정 공무직근로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① 시장은 채용예정 기간제근로자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고용승인을 요청하여 채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270일 미만으로 정해야 하며, 연도를 달리하여 270일 미만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상시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2조(실무수습) ① 신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실무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습 중인 공무직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른 심사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행한 채용·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훈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훈령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서장 성 명	인적자원과장 이 재 복
	팀 장 성 명	공무직운영팀장 오 승 하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소 영 (031-8075-2410)

채용시험 법정가점 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법정가점 대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2. 부가점수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퍼센트 가점

3. 적용 기준

- 가.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나. 그 밖에 법정가점 적용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1.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기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사례)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 |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 필기 단계 피해 | →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 ■ 서류 단계 피해 | →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 | | |
|--------------|---|------------------|
|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 | 피해자 그룹 면접 재 실시 |
| ■ 필기 단계 피해 | →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 실시 |
| ■ 서류 단계 피해 | →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 실시 |

2. 부정합격자 확정 · 퇴출 전(前)이라도 우선 시행

가.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고양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그 밖에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향후 고양시 심사
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고 있으며, 모든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고양시장 귀하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1. 채용부서 :
2. 채용분야 :
3. 기피(회피) 대상자 : 명

가. 기피 위원

소속	직위	비고(사유 등)

나. 회피 대상자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비고(사유 등)

5. 기피(회피) 사유

채용 심사위원의 기피(회피)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음.

년 월 일

수험번호(소속)

생년월일(직위)

성명

(서명)

고양시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고양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양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고양시장 귀하

부정합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고양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록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거짓,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고양시장 귀하

공무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양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고양시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소속부서		업무내용

제1조(목적)

“을”은 ○○○(부서·기관명)의 ○○○(담당업무명)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 중에 있는 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수)

- ① (임금) “갑”은 “을”에게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6장 임금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반납해야 한다.
- ④ (시간외근로수당) “갑”은 “을”의 연장근로(「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한다.
-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했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휴가일수를 제외

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빼고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

“을”의 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시간)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법률)

보수, 근무, 휴가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8조(계약 해지 및 면직)

“갑”은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1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을 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석)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조(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주 소 :

대 표 자 : 고 양 시 장 (인)

성 명 :

(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단, 대체근로자의 경우 결원자가 조기복귀 또는 대체발령 시 그 전날까지로 한다.)			
근무장소 (부서)				
업무내용 (직종)				
근로일	○요일 ~ ○요일 (주 ○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주 시간, 1일 시간 근무(오전 시 ~ 오후 시)			
휴게시간	※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부여			
휴일 및 휴가	○ 최초 배치일부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여성 기간제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 부여			
보수	○ 내역 - 일급 원 -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1일(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 그 밖에 4대 보험 등 공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 ○ 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 (계좌정보:)			
그 밖의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직종 및 업무환경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부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 가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고 양 시 장 (인)			근로자 (인)	

실무수습 업무실적

(근로자용)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채용직종	근무개시일	비 고

☐ 근무기간 : '00. 00. 00. ~ '00. 00. 00.(00개월)

☐ 업무실적

업 무 명	추 진 업 무 내 용	비 고

☐ 직무수행능력 관련 사항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또는 사용가능 프로그램, 외국어 능력 등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실무수습 적격성 심사 평가표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20)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5점	5	4	3	2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5점	5	4	3	2
직무수행 능력 (30)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0점	10	8	6	4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5점	5	4	3	2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	10점	10	8	6	4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5점	5	4	3	2
직무수행 태도 (50)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50점	50	40	30	15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실무수습 적격성 심사 평가 집계표

□ 심사 평가결과

- 합격 기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 70점 이상

연번	근로자	심사 위원별 평가점수					총점	최고·최저 제외		합격 여부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총점	평균	
1	○○○	95	85	80	90	65	415	255	85	적격
2	○○○	60	70	95	50	65	340	195	65	부적격

실무수습 적격성 심사 의결서

회의일시	. . . () 00:00		회의장소		
심사안건					
심사위원	구분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심사결과	1. 심사대상자 중 ○○명 적격, ○○명 부적격 2. 적격자는 0000.00.00일 기준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3. 부적격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함				
※ 적격성 심사 평가 집계표 별첨					

(5쪽)

실무수습 적격성 심사 결과

기관(부서)명	성명	직종	고용형태	채용일	생년월일	나이	합격 여부	비고
○○○	○○○		수습 근로자				합격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권고(2023. 3. 15.)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
 -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기구(채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채용공고, 전형 기준, 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상세 공정채용절차 규정(제9조부터 제23조까지)
 - 채용점검위원회 등 내부 통제 기준 규정(제24조)
- 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결정 및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도화함(제28조).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409호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채용, 근로조건”을 “근로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공무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공무직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사부서”란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청 공무직 운영 총괄 부서를, 구 및 동은 구청 주무 부서를 말하며, 인사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현원관리, 전보 및 징계를 담당한다. 다만, 사용부서별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채용, 근로계약, 직종 및 보직변경, 기관 간의 전보는 본청의 공무직 운영 총괄 부서에서 관리한다.
4. “예산부서”란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등의 예산 편성을 총괄 관리하는 시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를 말한다.
6.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각 기관규정”을 “내부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배제한다”를 “받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미화, 시설물청소, 주차관리, 도로보수, 산림보호 등”을 “환경관리, 시설물 청소, 도로보수, 산림보호, 검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무, 행정, 전산, 상담”을 “사무, 행정, 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없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채용”을 “정원 및 인사관리”로 한다.

제2장 다음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원관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정수책정)”을 “(정원 책정 요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수책정”을 “정원 책정”으로, “정수”를 “정원”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수”를 “정원”으로 한다.

-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정원을 새로 책정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인사부서는 사용부서가 제출한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채용목적·근무내용·인원·사무량 등의 적정 여부와 재원 및 정원과의 상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 책정 통보서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원 책정의 기준 등) 인사부서는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삭감한다.

1. 사용부서가 정원 책정 사무와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한 경우
2.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 인력이 발생한 경우
4. 채용 목적 외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제7조의 제목 중 “비치”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수책정 승인대장 :”을 “정원 책정 승인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력 관리대장 :”을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카드 :”를 “인사관리카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 기록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하며,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소는 덕양구보건소장이 각 보건소 간에 전보할 수 있으며, 도서관센터는 도서관센터소장이 각 도서관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대장”을 “출근·퇴근 시 출퇴근대장 또는 복무관리시스템”으로 하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 그 밖에”를 “질병 또는 그 밖의”로, “증명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결근계를 제출”을 “허가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을 “서류를”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직무교육 ,”을 “직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조퇴, 외출)”을 “(조퇴, 외출 및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출 하고자”를 “외출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였을”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09:00”을 “오전 9시”로, “18:00”을 “오후 6시”로, “12:00”을 “오후 12시(정오)”로, “13:00”을 “오후 1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따라서”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주민전체”를 “주민 전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로 인하여”를 “직무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초래하거나”를 “일으키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밀로써”를 “비밀로”로 한다.

제19조 중 “아니” 를 “안”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무원포함)” 을 “(공무원을 포함한다)” 로, “아니 된다” 를 “안 된다” 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를 “근로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점직으로 인하여” 를 “점직으로” 로 하며, “초래할” 을 “가져올” 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공민권” 을 “참정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민권” 를 “그 밖의 참정권” 으로 한다.

제4장부터 제8장까지를 각각 제5장부터 제9장까지로 하고, 제8장의2를 제9장의2로 하며, 제9장을 제10장으로 하고,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휴가 및 휴직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휴가의 종류) 근로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40시간” 을 “주 40시간”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병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3(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8.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공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의4(특별휴가)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산정방법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4세(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근로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근로자를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고양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⑥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근로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⑦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경우 군 입영 행사 등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다.

제28조제1항 중 “이상”을 각각 “이상의”로,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산후”를 “출산전후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아니”를 “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중 “까지 :”를 각각 “까지:”로, “이후 :”를 “이후:”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생리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0조 중 “때는” 을 “때에는” 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본문 중 “산입” 을 “포함”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산입” 을 “포함” 으로 한다.

제33조 중 “받고자 하는” 을 “받으려는” 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를 “인사부서는 근로자” 로, “있는 경우” 를 “있을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중 “호 :” 를 각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제3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35조제4호: 연간 90일 이내(이 경우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며, 1회

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인사부서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간주하여”를 “보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직하고자”를 “복직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징계에 따르지 않고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년은 60세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정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정기간”을 “정해진 기간”으로 하며, “아니할”을 “않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된 때”를 “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불가능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9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발생한 때”를 “발생할 때”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할 때”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퇴직원)”을 “(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최소

10일”을 “퇴직희망일 10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퇴직원”을 “사직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장(종전의 제5장)의 제목 중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포상) ① 시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호 중 “중징계 :”를 “중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징계 :”를 “경징계:”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를 “재해 또는”으로, “초래하게 한”을 “일으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배”를 “위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하게 한”을 “가져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회개하게”를 “뇌우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은 “각 구청”으로, “위원장은”을 “이 경우 위원장은”으로, “자치행정국장(구청은 구청장)”을 “인사부서 담당 국장(각 구청은 구청장)”으로, “인적자원과장(구청은 자치행정과장)”을 “시 본청 및 각 구청의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해 시 본청 및 각 구청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각각 두되, 간사는 시 본청 및 구청의 공무원 운영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때에는” 을 “경우” 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명시하고” 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행함에 있어” 를 “진행할 때” 로, “들어야하며” 를 “들어야 하며”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청구 할” 을 “청구 할” 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아니할” 을 “않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을 “않았을” 로, “기록에 명시하고” 를 “기록하고” 로, “서면심사에 의하여” 를 “서면심사로”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형사사건으로 인한” 을 “형사사건에 따른” 으로, “서면에 의하여” 를 “서면으로”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 를 “경우” 로, “서면에 의한” 을 “서면” 으로 하며, “아니한” 을 “않았을”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아니한” 을 “않을” 로,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경우에는” 을 “경우” 로, “지남으로써” 를 “지나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거부한” 을 “거부할” 로, “첨부하여야” 를 “첨부해야” 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7조 중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를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아니하였을” 을 “않았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고하고자”를 “해고하려고”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과 달리 하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이에”를 “그에”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 “발생시의”를 “발생 시”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재 그 밖에”를 “화재 또는 그 밖의”로, “발생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을 “발생 가능한 징후를 발견했을”로, “취합과”를 “합과”로 “보고해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합의를”을 “합의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근로자에 대하여는”을 “근로자에게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9조제6호 중 “의하여 행할 것”을 “따를 것”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뿐만”을 “근로자뿐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도”를 “근로자에게도”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72조 중 “사유에 대하여”를 “사유로”로, “한도 내에서 시는”을 “한도에서”로 한다.

제7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본장에 규정한”을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으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참고란 중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52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를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52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제1항의 규정” 을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제1항” 으로 한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진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	--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서장 성 명	인적자원과 이 재 복
	팀 장 성 명	공무직운영팀장 오 승 하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소 영 (031-8075-2410)

[별표 1]

직종의 분류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무 내 용	해 당 직 종
1. 기술지원직	기술지원 및 보고, 시설점검 업무 등	• 전기보조원 • 지하차도관리원 • 가로등수리원 • 보일러관리원 • 통신시설관리원
2. 환경관리직	환경관리, 시설물 청소, 도로보수, 산림보호, 검침 등	• 환경관리원 • 공원관리원 • 수로원 • 준설원 • 검침원 • 청사관리원 • 생활체육공원관리원
3. 전문직	전문자격 또는 법에 따라 채용된 경우	• 건강관리사 가(간호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영양사 • 사례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 • 아동복지교사(25시간), 아동복지교사(12시간)
4. 지원직	사무, 행정, 상담, 연구, 조사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	• 사무보조원 • 연구보조원 • 자료정리원, 자료정리원(주말) • 건강관리사 나 • 조리사 • EM배양원 • 방역소독원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제5조제4항 관련)

(단위 : 명)

부 서 별	합 계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전문직	지원직
총 계	693	6	286	164	237
본청 소계(의회)	106	3	15	54	34
언론홍보담당관	1	-	-	-	1
정보통신담당관	1	1	-	-	-
행정지원과	7	-	-	1	6
민원여권과	7	-	-	-	7
회계과	1	-	-	-	1
재산관리과	4	2	1	-	1
세정과	1	-	-	-	1
징수과	5	-	-	-	5
복지정책과	9	-	-	8	1
여성가족과	3	-	3	-	-
아동보육과	45	-	-	45	-
환경정책과	3	-	-	-	3
기후에너지과	3	-	-	-	3
자원순환과	6	-	6	-	-
관광과	2	-	2	-	-
체육정책과	2	-	2	-	-
시민안전담당관	1	-	1	-	-
미래산업과	2	-	-	-	2
버스정책과	1	-	-	-	1
도로정책과	1	-	-	-	1
의회사무국	1	-	-	-	1
보건소 소계	101	1	0	88	12
덕양구보건소	36	1	-	31	4
일산동구보건소	34	-	-	30	4
일산서구보건소	31	-	-	27	4
농업기술센터	5	0	0	0	5
사업소 소계	253	1	87	0	165
푸른도시사업소	56	-	54	-	2
도서관센터	162	-	-	-	162
상하수도사업소	32	-	32	-	-
도로건설사업소	3	1	1	-	1

부 서 별	합 계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전문직	지원직
구청 계	228	1	184	22	21
덕양구 소계	121	1	101	11	8
자치행정과	5	-	-	1	4
시민봉사과	2	-	-	-	2
세무2과	2	-	-	-	2
사회복지과	1	-	-	1	-
환경녹지과	9	-	9	-	-
청소농정과	64	-	64	-	-
안전건설과	12	1	11	-	-
동행정복지센터	26	-	17	9	-
일산동구 소계	61	0	48	6	7
자치행정과	6	-	1	1	4
시민봉사과	3	-	-	-	3
사회복지과	1	-	-	1	-
환경녹지과	30	-	30	-	-
안전건설과	9	-	9	-	-
동행정복지센터	12	-	8	4	-
일산서구 소계	46	0	35	5	6
자치행정과	5	-	-	1	4
시민봉사과	2	-	-	-	2
사회복지과	1	-	-	1	-
환경녹지과	20	-	20	-	-
안전건설과	8	-	8	-	-
동행정복지센터	10	-	7	3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7조의4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에 드는 일수를 더하여 줄 수 있다.

[별표 4]

징계의 양 결정기준 (제58조 관련)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①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② 직무상 지시사항 불이행 ③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④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 ⑤ 그 밖의 사항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2.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① 무단결근 ②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4. 청렴의무 위반	별표 5와 같음			
5. 품위유지의무 위반 ① 성폭력 ②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③ 음주주태, 도박 등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④ 그 밖의 형사사건 입건 ⑤ 음주운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별표 6과 같음			
6. 경력 등 이력 허위 기재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58조 관련)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 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거나, 그로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58조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감봉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고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경우		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은 경우		해고-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원 책정 요구서				
직 종				
근 무 내 용				
채용 목적 (구체적 기재)				
요 구 인 원				
연 간 사 무 량	사 무 명	사무처리 총 필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 분	필요액	산 출 근 거	
	보수			
	수당			
재 원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정원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 ○ [인] 고양시장 귀하				

정 원 책 정 통 보 서	
직 종	
채 용 목 적	
근 거	
책 정 인 원	
담 당 사 무	
기 타 사 항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정원 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 ○ 부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원 책정 승인대장

사용부서	직 종	인 원	채용일	월급여액	근 무 내 용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대장

부서명	직 종 (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초 고용일	현부서고용일	비고

[별지 제5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카드

(앞면)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직 종			
		한 자		소 속			
	생년월일			연락처			
	성 별			주 소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학 력				경 력			
기간 (부터 ~까지)		학교 (전공)	학위	기간	근무처		
				~			
병역사항	입대일			자격증	취득일	종목(등급)	
	제대일						
	병역종류						
근로계약일							

(뒷면)

연번	근무기간 (부터 ~ 까지)		근무부서	담당사무

신 분 증 양 식

1. 모형 및 규격 : 공무원증 규칙 준용

(전면)

신 분 증
사진
성 명
고 양 시 장

(후면)

IC칩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재직·경력증명서

제 호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근 무 사 항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년 년	월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종	
		한자		④생년 월일		⑤재직 기간	
	⑥주소						
⑦징계사유							
⑧징계의결 요구권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확 인 서

	①소 속	②직 종	③성 명			
1. 인적사항	(현재)	(현재)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 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①공 적 사 항		②징 계 사 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소 속 부 서	일 자	종 류	소 속 부 서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5. 그 밖의 사항	* 정상 참작사유 기록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						

[별지 제13호서식]

징 계 처 리 대 장

(년도)

(징계위원회)

번 호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징계 의결 번호	비고
	소속	직급	성명	현 소 속 위 직	혐의내용	요구자 의 건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설조사 기 간	징계위원회 개 회	의결일	의결서 통고일	특기사항		
				혐의당시 소속직위					조 사 자						
										제 회					
										. . .	. . .				
										제 회					
										. . .	. . .				
										제 회					
										. . .	. . .				
										제 회					
										. . .	. . .				
										제 회					
										. . .	. . .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① 소속부서	② 해당 직무	③ 성 명
④ 의결주문			
⑤ 이 유			
년 월 일 제 회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채용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휴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무원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채용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함.
- 나. 출장 및 공가 사항을 신설하고, 휴가의 종류, 병가, 특별휴가 등 복무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3조 및 제26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제35조).
- 라. 정년 및 정년퇴직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제40조).
- 마. 직무내용 및 직종명칭을 정비함(제4조제2항 및 별표 1).
- 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표를 정비함(제5조 및 별표 2).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410호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고양시 공무원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반복갱신”을 “반복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만,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태만히 함으로써”를 “게을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2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타업무”를 “다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6조 중 “변상하여야”를 “그 피해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간외 근로)”를 “(시간외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사자간”을 “당사자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한 여성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를 “아름은 여성 기간제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를 “여성 기간제근로자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질병 그 밖에”를 “질병 또는 그 밖의”로, “결근하고자 할”을 “결근할”로,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를 “제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언지 아니하고”를 “받지 않고”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및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외출하고자”를 “외출하려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언지 아니 하였을”을 “받지 않았을”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무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병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휴일 및 휴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한다.

제2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조사휴가 및 출산휴가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하여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가 검진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기간제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재한”을 “기록한”으로, “지급을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퇴직된다”를 “당연퇴직 된다”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장애로 인하여”를 “장애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사전”을 “미리”로, “기간동안”을 “기간에”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조치”를 “징계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손상케 하는”을 “손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3장에서 정한 복무자세를”을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아니하며,”를 “않는다.”로, “해고하고자”를 “해고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는 규정은”을 “제40조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사변,”을 “천재지변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하거나”를 “일으키거나”로, “경우로서”를 “경우”로 한다.

제42조의3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업무외 재해)”를 “(업무 외의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5조 중 “여성이라는”을 “시장은 여성이라는”으로, “남녀간”을 “남녀 간”으로, “체결하여서는”을 “체결해서는”으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발생시의”를 “발생 시”로,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조치기준”을 “조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제절차”를 “구제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49조 중 “기울여야”를 “하여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를 “해결한다” 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을 “기간제근로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발하거나,” 를 “개발하거나”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조치로써” 를 “조치로” 로, “적게한” 을 “적게 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 를 “다른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의”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2장(제51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서장 성 명	인적자원과 이 재 복
	팀 장 성 명	공무직운영팀장 오 승 하
	담당자 성명 · 전화	이 재 경 (031-8075-2411)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채용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복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채용관련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함.
- 나. 병가, 공가 및 경조사휴가 등 복무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9월 22일

고양시 훈령 제411호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양관리,”를 “사양관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포획·구조 업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④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휴무하거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운영할 때”를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로, “최선의 조치를 해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을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을 “미리”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형사 고발할”을 “이동하려고 할 때에는 법적 조치를 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센터 운영자. 이 경우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담당 직

원 1명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책 추진, 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등” 를 “시책 추진 관리”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등” 을 “교육”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보조 등” 을 각각 “보조”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교육 등” 을 “교육”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을 “(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물보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훈령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입 안 자	부서장 성 명	농산유통과장 한 성 준
	팀 장 성 명	동물보호팀장 안 세 원
	담당자 성명 · 전화	조 재 현 (031-8075-4657)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2023.5.23.)으로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기능을 고양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나.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함(제6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소하천명 : 풍동천
2. 시행위치 : 풍동 705-27번지 ~ 풍동 50-1번지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도시공간과 어울리는 소하천 정비
 - 나. 공사개요
 - 사업량 : L=1,733m, B=23~26m
 - 호 안 : 친환경방틀공 20,052㎡, 전석 쌓기 2,219㎡
 - 교 량 : 재가설 3개소, 철거 3개소, 확장 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37, 406호
5. 하천공사의 공사기간 : 2023.9.23.부터 2025.12.31.까지

2023년 9월 22일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양시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년)	흉고둘레 (cm)	수고 (m)	비고
경기-고양-23 (1982.10.15.)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27	회화나무	1	250 (지정당시)	250	20	해제

2.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고사로 인한 보호수 지정목적 상실

3. 지정해제일 : 2023. 9. 22.

4.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 녹지과(☎ 031-8075-4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지하차도)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지하차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고양삼송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지하차도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위치	지하차도 연장 및 폭원(내경기준)	사업면적 (A)	비고
대로1-9호선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6번지 일원	L=441.6m B=17.6m	13,616m ²	기존 도로구간 내 지하차도 신설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대로1-9호선 지하차도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자	주소	
1	원흥동	468-10	구	713	713	국토해양부				
2	원흥동	569-24	구	17	17	국토해양부				
3	원흥동	산69-1	도	198	198	경기도				
4	원흥동	573-3	도	27	27	국토해양부				
5	원흥동	178-6	도	27	27	고양시				
6	원흥동	178-5	도	28	28	고양시				
7	원흥동	178-2	도	16	16	고양시				
8	원흥동	178-1	도	14	14	고양시				
9	원흥동	178-3	전	222	222	고양시				
10	원흥동	178-4	전	27	27	고양시				
11	원흥동	178-15	도	1,106	1,106	경기도				
12	원흥동	178-11	도	2,557	2,557	경기도				
13	원흥동	178-9	도	23	23	경기도				
14	원흥동	573-7	도	106	106	국토해양부				
15	원흥동	172-2	도	49	49	고양시				
16	원흥동	172-3	도	80	80	국토해양부				
17	원흥동	산72-1	도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8	원흥동	172-5	도	52	52	고양시				
19	원흥동	172-4	도	157	157	경기도				
20	원흥동	172-6	도	80	80	국토해양부				
21	원흥동	172-7	도	20	20	경기도				
22	원흥동	171-4	도	122	122	고양시				
23	원흥동	171-2	도	16	16	고양시				
24	원흥동	171-5	도	178	178	경기도				
25	원흥동	171-6	도	402	402	경기도				
26	원흥동	170-9	도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27	원흥동	170-8	도	138	138	경기도				
28	원흥동	455-1	전	99	99	경기도				
29	원흥동	455-17	도	805	805	경기도				
30	원흥동	455-26	도	46	46	국				
31	원흥동	455-9	도	87	87	국(국토교통부)				
32	원흥동	178-31	도	112	11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원흥동	573-2	도	475	475	국(국토교통부)				
34	원흥동	178-8	임	32	32	경기도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자	주소	
35	원흥동	산69-6	임	223	223	고양시				
36	원흥동	산69-3	도	348	348	경기도				
37	원흥동	178-12	임	257	257	경기도				
38	원흥동	178-10	도	414	414	경기도				
39	원흥동	178-16	임	301	301	경기도				
40	원흥동	178-13	임	692	692	경기도				
41	원흥동	183-5	임	83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42	원흥동	183-21	임	29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43	원흥동	183-9	도	744	744	경기도				
44	원흥동	183-11	임	357	3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45	원흥동	184-4	답	422	422	고양시				
46	원흥동	573-4	도	612	612	국(국토교통부)				
47	원흥동	184-5	도	108	108	국(국토교통부)				
48	원흥동	184-1	도	127	127	경기도				
49	원흥동	171-3	도	3	3	고양시				
50	원흥동	170-2	도	32	32	경기도				
51	원흥동	170-6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52	원흥동	170-7	도	241	241	경기도				
53	원흥동	169-1	도	374	374	경기도				
54	원흥동	455-18	도	18	18	경기도				
55	원흥동	455-22	전	18	18	경기도				
56	원흥동	468-14	구	29	29	국토해양부				
57	원흥동	569-6	구	8	8	국토해양부				
합 계			57필지	13,616	13,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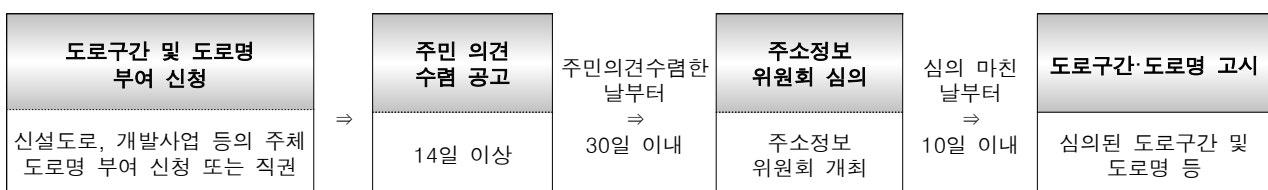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 등의 설정·부여 절차)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3. 9. 22. (금)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별표1~3] 참조
4. 도로명 등의 부여 절차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토지정보과(☎031-8075-3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별표1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 위계	도로구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기 점	종 점	기초번호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1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36-12	장항동 522-40	1 → 184	20	30~40	1,833	장항한강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2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34-158	대화동 1948-32	1 → 66	20	25~30	660	장항한강1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3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34-154	장항동 626-11	1 → 150	20	13~20	1,490	장항한강2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4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57-43	장항동 657-124	1 → 104	20	17~23	1,040	장항한강3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5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63-11	장항동 664-3	1 → 28	20	20~23	276	장항한강4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6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66-21	장항동 658-15	1 → 88	20	15~18	875	장항한강5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7	일산동구 장항동	로	장항동 673-86	장항동 516-44	1 → 132	20	15~25	1,320	한류월드1로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별표3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도로 위계	도로구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기 점	종 점	기초번호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1	일산동구 성석동	길	성석동 938-9	성석동 1304-1	1 → 18	20	6	165	중산로306번안길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 도로구간 위치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발로 36-81 등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317-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발로 36-81 (성석동)	2023-09-22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 (백석동)	2023-09-22	20081010	강촌-백석의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33 (향동동)	2023-09-22	20180525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3, 13-3, 1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16번길 84-33 (행주외동)	2023-09-22	20100126	행주산성로 시점에서 116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97-17, 197-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83번길 15 (내유동)	2023-09-22	20100126	내유길 시점에서 83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97-12, 197-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83번길 13 (내유동)	2023-09-22	20100126	내유길 시점에서 83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392-7, 139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예현로 60 (풍동)	2023-09-22	20180525	고유지명 인용	
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748-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91-9 (법곳동)	2023-09-22	20100126	송포로 시점에서 113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578-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 196 (가좌동)	2023-09-22	20120727	송포와 파주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19-5, 218-5, 832-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42-19 (화전동)	2023-09-22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지나는 가장 큰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69-6, 6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1 (중산동)	2023-09-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02-13, 29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24 (화정동)	2023-09-22	20100126	화수로 시점에서 14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05-14, 206-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14번길 97-12 (대자동)	2023-09-22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414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4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4	2023-09-21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에 따른 지번확정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97-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9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83번길 3	2023-09-21	지번 정정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폐실건을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14번길 107-15	2023-09-15	건물 신축	2011-07-29	대자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14번길 107-19	2023-09-15	건물 신축	2011-07-29	대자동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42-19	2023-09-18	건물 신축	2011-07-29	화전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7호]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7호: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2.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인정 의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1-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7호] 사업
- 명 칭 :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성사동 331-5번지 일원	19,067	고양시고시 제2008-172호 (2008. 10. 31.)	
시행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성사동 331-5번지 일원	19,06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성명 : 고양시장(버스정책과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합 계		10필지		4,621	19,067							
1	덕양구 성사동	331-1	전	142	142	이*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4, 5**동 1*0*호 (화정동, **마을)				
2	덕양구 성사동	331-3	전	2,767	2,767	1/6	표*근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 **아파트				
						1/6	표*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 *층 *호				
						1/6	표*숙	고양시 덕이동 7**				
						1/6	표*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 2**-1*				
						1/6	표*경	고양시 토당동 8**-1* **빌라 *동 *01호				
						1/6	표*수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 3**-*				
3	덕양구 성사동	331-4	전	2,072	2,072	민*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번길 10*-5* (성석동)				
4	덕양구 성사동	331-5	전	1,811	1,811	표*웅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5**-**		유*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9** **마을 2**-*0*	가처분 (소유권이전등 기 청구권)
5	덕양구 성사동	331-6	전	4,550	4,160	민*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번길 10*-5* (성석동)				
6	덕양구 성사동	332-1	답	300	300	밀양박씨관원 공파중친회		서울 성동구 구의동 221-21				
7	덕양구 성사동	437	전	2,265	2,265	행주기씨대중 중		고양군 원당면 성사리 433				
8	덕양구 성사동	438-1	답	2,539	2,316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동)		금모래신용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근저당권, 지상권
9	덕양구 성사동	438-2	전	2,401	2,401	민*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번길 10*-5* (성석동)				
10	덕양구 성사동	439	전	833	833	민*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번길 10*-5* (성석동)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 연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덕양구 성사동	437전	통신주	철주 (6.0m)	1주		KT (덕양지사)				
2	덕양구 성사동	437전	한전주	CON,C (10m)	1주		한국전력				
	덕양구 성사동	437전	통신주	철주 (6.0m)	1주		KT (덕양지사)				
3	덕양구 성사동	437전	한전주	CON,C (10m)	1주		한국전력				
4	덕양구 성사동	437전	냉동고	4m*2m	8.0㎡	8.0㎡	행주기씨 대종중	고양군 원당면 성사리 433			
5	덕양구 성사동	437전	비닐하우스	20m*7m	140.0㎡	140.0㎡	행주기씨 대종중	고양군 원당면 성사리 433			
6	덕양구 성사동	437전	비닐하우스	19m*13.5m	256.5㎡	256.5㎡	행주기씨 대종중	고양군 원당면 성사리 433			
7	덕양구 성사동	331-1전	비닐하우스	6.5*3.5	22.8㎡	22.8㎡	이*옥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 5**동 1*0*호			
8	덕양구 성사동	331-3전	웬스	철망H:1.1m		L:53m	표*근 외 5명	안산시 월피동 4** **아파트 *-*05 등			
9	덕양구 성사동	331-3전	블루베리	H:1.5m		510그루	표*근 외 5명	안산시 월피동 4** **아파트 *-*05 등			
10	덕양구 성사동	331-5전	관정	1.0*1.0*0.7	1개		표*웅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5**-**	유*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9** **마을 2**-*0*	
11	덕양구 성사동	331-5전	한전주	CON,C (10m)	1주		한국전력				
12	덕양구 성사동	332-1답	비닐하우스	12*6.3	75.6㎡	75.6㎡	밀양박씨 관원공파 종친회	서울 성동구 구의동 221-21			
	덕양구 성사동	332-1답	가건물	6*3	18.0㎡	18.0㎡	밀양박씨 관원공파 종친회	서울 성동구 구의동 221-21			
13	덕양구 성사동	332-1답	한전주	철주 (6.0m)	1주		한국전력				
14	덕양구 성사동	331-4전	톨게이트		1개		고양시				입구
15	덕양구 성사동	331-4전	웬스	철망H:1.5m		L:103m	고양시				
16	덕양구 성사동	331-4전	웬스	철망H:1.0m		L:63.5m	고양시				
17	덕양구 성사동	331-4전	가로등	철주D:0.2m, H:5.0m	1주		고양시				

18	덕양구 성사동	331-4전	정산소	합석2.2*1.3	2.9㎡	2.9㎡	고양시				
19	덕양구 성사동	331-4전	표지판	철판0.7*0.6	1개		고양시				
20	덕양구 성사동	331-4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21	덕양구 성사동	331-4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22	덕양구 성사동	331-4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23	덕양구 성사동	331-4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24	덕양구 성사동	331-4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25	덕양구 성사동	438-2전	웬스	철망H:1.5m		L:84m	고양시				
26	덕양구 성사동	438-2전	웬스	철망H:1.0m		L:89m	고양시				
27	덕양구 성사동	438-2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28	덕양구 성사동	438-2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29	덕양구 성사동	438-2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0	덕양구 성사동	438-2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1	덕양구 성사동	438-2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2	덕양구 성사동	439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3	덕양구 성사동	439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4	덕양구 성사동	439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5	덕양구 성사동	439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6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7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8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39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40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41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표지판	철판0.7*0.6	1개		고양시				
42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43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표지판	철판0.7*0.6	1개		고양시				

44	덕양구 성사동	331-6전	정산소	합석2.2*1.3	2.9㎡	2.9㎡	고양시				
45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한전주	CON,C (16m)	1주		한국전력				
46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톨게이트		1개		고양시				
47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48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49	덕양구 성사동	331-6전	가로등	철주D:0.2mL :5.0m	1주		고양시				
50	덕양구 성사동	331-6전	표지판	철판1.8*0.9	1개		고양시				
51	덕양구 성사동	331-6전	웬스	철망H1.0m		L:93m	고양시				
52	덕양구 성사동	331-6전	웬스	철망H:1.5m		L:195m	민*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번길 10*-5* (성석동)			
53	덕양구 성사동	438-1답	반송	H:1.5~2.0m		51그루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나무
54	덕양구 성사동	438-1답	비닐하우스	14*3.4	47.6㎡	47.6㎡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55	덕양구 성사동	438-1답	컨테이너	합석6.0*3.0	18.0㎡	18.0㎡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56	덕양구 성사동	438-1답	냉동고	3.0*2.0	6.0㎡	6.0㎡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57	덕양구 성사동	438-1답	조립식	합석6.0*3.0	18.0㎡	18.0㎡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58	덕양구 성사동	438-1답	웬스	철망H:1.5m		L:18m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59	덕양구 성사동	438-1답	컨테이너	합석6.0*3.0	18.0㎡	18.0㎡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60	덕양구 성사동	438-1답	비닐하우스	18.0*8.0	144.0㎡	21.0㎡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61	덕양구 성사동	438-1답	비닐하우스	18.0*6.0	108.0㎡	108.0㎡	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2**-**(남가좌 동)	금모래 신용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1(남가좌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42호선(서삼릉길)]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9-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42호선(서삼릉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2.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인정 의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22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9-2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42호선) 사업
- 명칭 : 서삼릉길(소로1-242호선)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구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1	242	10.0~ 16.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52	원흥동 69-23	원흥동 109-5	-	고양시 고시 제2023-157호 (2023.05.02.)	
시행	소로	3	242	10.0~ 16.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52	원흥동 69-23	원흥동 109-5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조서

용 지 번 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 면적 (㎡)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9-23	도	24	24		-	국 (국토교통부)	-	-	-	
2	"	69-19	임	104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풍동 1*** 숲속마 을 50*-*00*	장*일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풍동 1*** 숲속마 을 50*-*00*	정*향	-	-	-	
3	"	69-20	도	39	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풍동 1*** 숲속마 을 50*-*00*	정*향	-	-	-	
4	"	산39-18	임	992	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	손*경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향동 6*-**	손*원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 정로 4*-* (공향동)	손*원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 목로5*길 *-* (목동)	손*원	-	-	-	
5	"	산39-14	임	694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일산로 2**, 2**동 100*호 (마두동, **마 을)	왕*현	-	-	-	
6	"	산39-10	임	1,587	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 구정동 4** **아파트 2*-*07	김*준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 ***오피스텔* 차 1*0*호	김*준	-	-	-	
7	덕양구 원흥동	산39-26	도	496	46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 구정동 4** **아파트 2*-*07	김*준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 ***오피스텔* 차 1*0*호	김*준	-	-	-	
8	"	69-22	도	298	231		-	국 (국토교통부)	-	-	-	
9	"	69-11	임	835	11		고양군 원당읍 원흥리 5*-*	임*형	-	-	-	
10	"	69-17	도	694	4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 수동 1***-*	장*섭	-	-	-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	장*섭	-	-	-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	장*섭	-	-	-	
11	"	69-18	임	2,876	1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번길 4*-** (성사동)	박*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3-3	고양시 산림조합	근저 당 지상 권	
12	"	69-26	임	1,488	58		서울특별시 다산로	하*룡	-	-	-	

용 지 번 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	편입 면적 (㎡)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 , 1*동 *02호 (신당 동,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 30*동 1*0*호 (구미동, **마 을)	하*주	-	-	-	
13	"	70-3	도	53	14		-	국 (국토교통부)	-	-	-	
14	"	69-21	도	498	447		-	국 (국토교통부)	-	-	-	
15	"	산22-2	도	298	87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1* **아파트 *동 20*호	김*년	-	-	-	
16	"	산15-11	임	595	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	이*용	-	-	-	
17	"	109-22	도	1,396	1,1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 **마을 10*-1*0*	손*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6-8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 지상 권	
18	"	109-4	도	159	159		-	경기도	-	-	-	
19	"	109-16	임	4,392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	이*용	-	-	-	
20	"	109-5	도	48	48		-	경기도	-	-	-	
계					3,530							